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2. 12. 1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1호로 2012년 11월 12일 김길자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 4. 11제정,
'08. 4.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비스 분야 및 고용현장 분야 등 사회전반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3,818건이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년 585건, 2009년 710건, 2010년 1,649건, 2011년 874건으로 월 평균 85.4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물 접근성 미비, 이동권 제한,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부분에서 접수율이 높았고 괴롭힘, 고용, 교육영역 순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의 변화와 관련법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영역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계획수립 시 반영 필요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 서울시,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

서초구, 강북구, 용산구

관 련 법 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